



기업상속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증가방식의 순자산세’ 도입 검토 |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 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여러모로 독특한 요소가 많다. 세계적으로 높은 고율의 과세,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유산세 방식, 그리고 중소기업에 국한된 가업승계공제 등이 그러하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는 생을 마감한 개인이 일평생 모아 놓은 재산이 상당히 많을 때, 세금을 징벌적 수준에 가깝게 과세하는 국가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재산이 많더라도 대기업 오너가 아니고 중소기업 소유주라면, 큰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대재산가가 아니라면, 일정 수준까지의 상속자산에 대해서는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한다. 매우 강화된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면서도, 상속재산의 과다에 따라 크게 차별화된 방식으로 과세상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특징이다. 격차 해소를 제일로 내세우는 상속세가 실제로는 공평과세에 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유별나게 강화된, 그러나 동시에 차별화된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나 구체적인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래의 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상속세가 현재와 같은 틀로 고착화된 과정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나, 여기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란 존재하지 않고 다분히 경로 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처음에 어떤 단순한 정치적 계기로 현재의 상속세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속세 논란을 생각하면, 다소 허무한 설명이다. 그러나 현 제도의 이러한 태생적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 제도 혁신의 첫걸음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속세는 금수저세?

물려받는 재산이 많다는 것은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과세되는 세금은 요즘 말로 금수저세에 해당한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선대의 자산 불평등이 후대에까지 계속된다면, 이를 기꺼이 지지해 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상속재산에 고율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기저에는 금수저에는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이 같은 정서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어, 소수 재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도 상속세를 금수저세로 인식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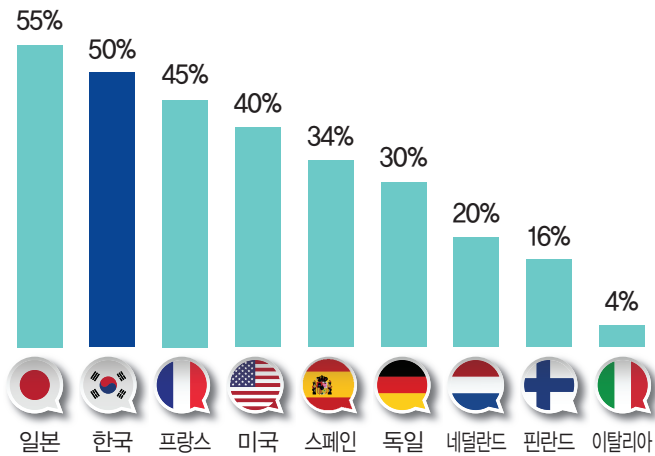
그러나 상속세가 기업의 대주주나 많은 자산을 소유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나 과세되고 대부분의 사람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생각에서, 이 세금을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사실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과거 상속세 이슈에 대해서는 국책연구원에서 이렇다 할 보고서도 거의 내놓지 않았고, 주무부처인 세제실도 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정도의 원론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기치 아래 현재 수준의 상속세 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적 동기와 명분을 걸고 특정 정부에서 크게 강화된 세제가 형식적인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와 더불어 실제 과세 과정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오랜 기간 유지돼 오늘에 이른 것이 지금의 상속세 제도인 셈이다.

상속자산 규모에 따른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00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00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50%
30억원 초과	10억 4,000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자료 : 기획재정부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자료 : OECD

가업승계공제제도의 허(虛)와 실(實)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관계된 세금으로 치부된 상속세의 현실적 문제나 부작용은 거의 방치된 채, 20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다. 그 사이 경제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이 크게 바뀐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통 제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 이전 기업이 늘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산업화 1세대 기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상당수 업종에서 그들이 평생을 키웠던 기업들은 사양 산업화되었고, 그들의 퇴장 이후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기름밥 먹기를 거부하고, 지분 매각으로 얻은 현금 자산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세대가 두드러졌다. 기업상속에 대해 가업승계공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이다. 최초 법 개정 이후 현실에서 가업승계공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업경영의 순조로운 승계가 이루어지기에는 공제 총액에 제약이 너무 많았다.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확대되었고 공제수준도 높아졌으며, 여러 요건도 다소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공제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기업들의 수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도 활용에서 기업들이 실제 겪게 되는 고통을 줄이고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업승계공제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여기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바로 중

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를 확대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나, 대기업까지 공제를 확대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 이 의제는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민감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단순히 기업상속 과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제도 전반, 나아가 존폐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견기업의 상속공제에 관한 정책은 단순히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공방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가업승계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업승계공제 대상기업의 규모 확대는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 사회에 점차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의 징조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수준이 언론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상속세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대한 관심과 함께 문제 의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과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에 내재된 결함이 자연스럽게 부각된 것

故 이건희 삼성 회장 주식 유산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4.18%	0.08%	20.76%	2.88%	0.01%

총 가치 19조 원가량

상속세 11조 336억 원

자료 : YTN

이다. 현행 상속세 제도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상속세 과세의 구체적인 사항에 무관심했던 우리 국민 다수가 올 초부터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강화 입장의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행정부가 모두 제도 개선의 구체적 방안



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2000년 법 개정 이후 20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화된 상속세 제도가 드디어 국민적 관심 속에 주요 정책으로 이슈화 되고, 제대로 된 사회적 선택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 임기 말에 중대한 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이므로 올해 안에 상속세 개정이 입법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상속세 개편은 주요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실제 상속세 개편 작업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다음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상속세제 개선의 방법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들은 크게 근본적인 개편과 부분적인 개편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1) 근본적 개편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식이란 상속세의 폐지나 대체과세 도입을 포함한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상속세를 통한 자산 불평등 완화나 재분배 촉진은 형식적인 명분의 성격이 강하며, 현실에서 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전체 세수나 GDP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세수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상속세 세수의 절대적 규모와 협소한 과세 대상이라는 한계로 인해,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화된 상속세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의 재분배 효과는 OECD 하위 수준이라는 점이 단적인 증거다. 우리보다 앞서 상속세 제도를 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한 나라들의 사례는 이러한 의미에 근본적인 제도 개편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여기에 더해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망 이전의 생전 시기에 재산증액분에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저율로 과세하는 '증가방식의 순자산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은 사망 시 상속재산에 대해 일시 과세하는 현 제도보다 소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낮아진 세 부담도 여러 해에 걸쳐 분담하는

주요 국가 지니계수

(단위 : %)

국가	지니계수	국가	지니계수
남아프리카공화국	0.630	영국	0.348
브라질	0.539	호주	0.344
멕시코	0.454	캐나다	0.338
칠레	0.444	일본	0.329
미국	0.414	독일	0.319
인도네시아	0.390	프랑스	0.316
중국	0.385	한국	0.316
인도	0.378	스웨덴	0.288
러시아	0.375	네덜란드	0.285
이탈리아	0.359		

자료 : 월드뱅크 홈페이지(2020년 기준)

것이기에, 납세자 입장에서 합리적 대안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납세자 생전에 재산이 증가할 때마다 과세가 이루어지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 증여·상속을 원천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우량기업의 소유 지분은 현 세대 오너는 물론 지분을 상속한 다음 세대에서도 매각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여러 대에 걸쳐 핵심적인 상속기업의 소유 지분은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업승계경영의 원칙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는 제대로 된 과세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증가방식의 순자산세' 또는 간단히 줄여 '순자산증가세'는 지분 매각과 관계없이 지분가치 증가에 대해 과세되기에, 양도소득과세 전환 방식의 한계를 적절히 극복하는 장점도 있다. 생전 지분의 양도소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연히 그동안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된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해주면 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분할 원천 징수하는 순자산증가세에서 얻는 장점이 더 크고, 나아가 상속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서 특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미국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되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두 차례 위기 동안 급격히 늘어난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유럽 국가들도 부유세 도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부유세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참가한 순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이에

비해, '순자산증가세'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부유세 일종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추세에 적절히 부합하는 동시에, 본격적 부유세에 유보적일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대안 과세가 될 수 있다.

(2) 부분적 개편

부분적인 상속세 개편 방식은 근본적인 개편과 달리 현행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율 체계와 공제 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것을 뜻한다. 50%에 이르는 과도한 최고세율은 물론, 기업상속에 대해 프리미엄 대신 징벌적 과세를 가하는 60% 할증과세 제도는 최우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할증과세는 폐지가 타당하고 최고세율은 OECD 평균수준인 30% 중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업승계공제의 세부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것은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제도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지속적 감독에 수반되는 과도한 세무행정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업승계공제 대상은 적어도 중견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경영 안정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고 경제 활성화 기조에도 부합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일 목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 증가라는 전제조건을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승계공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건 사투에 직면한 주요 기업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상속세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앞의 상속세 세수 확대 vs. 국가경제규모 발전에 따른 전체적 세수 확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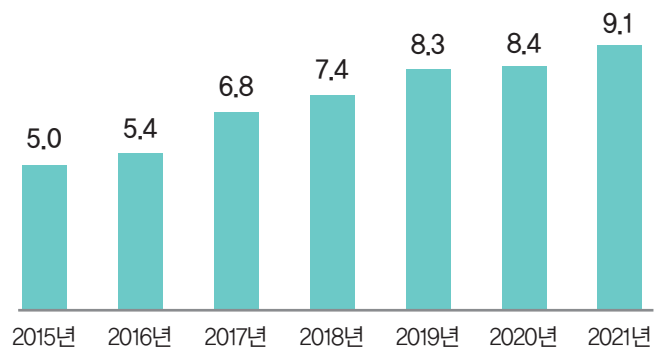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확대 경쟁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국내외 모든 기업들의 운명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더불어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 현 시점에서 국내 시장의 독과점 구조도 이제는 피 말리는 경쟁을 통과해야 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경제 및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상속에 대해 20년 전의 구시대적 발상에 얽매어 낡은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전체 규모에 비해 한 줌에 불과한 상속세 세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하게 함으로써 고용과 투자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세수 증가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상속세의 이중적인 성격에서 오는 정책적 혼란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상속세를 '금수저세'로 인식하여 공평과세를 떠올렸다면, 앞으로는 상속세가 '부자사망세(death tax on the super rich)'에 다름 아니며 효율과 공평과세 모두에 장애물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면적인 형평성 논리로 무장한 정치적 구호와 그에 따른 제도는 정치인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지지를 쉽게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지 의회 입법화만으로 정치적 소임을 다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도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 실패의 원인이 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진정한 제도 발전은 국민의 냉정한 이성과 현실적 판단에서만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수반되는 어려운 정책이 현실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보장한다. 상속세 과세 명분에서 얻는 당장의 정서적 만족감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촉진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공유하는 분배 구조 발전에 우리와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상속 · 증여세 추이

(단위 : 조 원)



결산기준, 2020년은 3차 추경, 2021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국내 · 외 경제지표

2021년 7월 기준

1. 국내 · 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9	2020 ^{IE}	IMF		OECD	
			2021 ^{IP}	2022 ^{IP}	2021 ^{IP}	2022 ^{IP}
한국	2.0	-1.1	3.1	2.9	3.3	3.1
세계	2.8	-3.5	5.5	4.2	4.2	4.0
미국	2.2	-3.4	5.1	2.5	6.5	4.0
중국	6.1	2.3	8.1	5.6	7.8	4.9
일본	0.3	-5.1	3.1	2.4	2.7	1.8
EU	-7.3	-6.8	4.2	3.6	3.9	3.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 · 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8	2019	2020	'21. 2월	3월	4월	5월	6월
원/달러	1,100	1,166	1,180	1,112	1,131	1,119	1,123	1,121
원/엔(100엔)	996	1,070	1,105	1,055	1,041	1,026	1,029	1,019
원/위안	166.4	168.6	170.9	172.3	173.8	171.4	174.6	174.7
원/유로	1,299	1,305	1,346	1,345	1,347	1,338	1,364	1,352
유가(Dubai)	69.7	63.5	42.3	60.9	64.4	62.9	66.3	71.6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8	2019	2020	'21.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1.6	0.6	-0.8	0.4	5.7	8.8	-6.1	-
소매판매	4.3	2.4	-0.2	8.2	10.9	8.6	1.7	-
설비투자	-3.6	-6.2	6.0	7.1	9.5	16.8	2.6	-
수출	5.4	-10.4	-5.4	9.3	16.4	41.2	45.6	39.7
수입	11.9	-6.0	-7.2	14.1	18.7	33.9	37.9	40.7